

	건강증진센터 규정		문서번호	MSU-
			제정일자	2014. 5. 14.
			최종개정일자	2017. 1. 16.
			담당부서	건강증진센터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목포과학대학교(이하 "대학"이라 한다)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건강증진센터(이하 "센터"라 한다)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임무) 센터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.<개정 2017.1.16>

1.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관리 및 상담
2. 건강 관련 정보의 제공 및 보건교육
3. 간단한 외상치료 및 일반의약품 투약
4. 학생활동에 필요한 의약품 지원
5. 교내 응급환자 발생 시 응급처치
6. 기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

제3조(조직) ① 센터장은 대학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센터장은 센터에서 수행하는 모든 직무를 관장하며, 소속직원을 지휘 . 감독한다.

③ 센터는 업무를 담당하는 간호사를 둔다.<개정 2017.1.16>

제4조(운영위원회)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제5조(투약) <삭제 2017.1.16>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종전에 설치된 보건소와 보건소 규정은 2014. 5. 13일부로 폐지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